

소방관계법규	소방관계법규 아침모의고사		소방학 이진형 교수
	시행 : 05.08(수) / 해설 : 05.14(화)		한국소방공무원학원
1.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권자와 지정요청권자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?			
① 소방청장, 시 · 도지사	② 시 · 도지사, 소방청장	③ 시 · 도지사, 소방본부장	④ 소방본부장, 시 · 도지사
2. 다음 중 특수가연물의 저장 · 취급기준으로 잘못된 것은?			
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	②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할 것	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 ² (석탄 · 목탄류의 경우에는 200m ²) 이하가 되도록 할 것	④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석탄 · 목탄은 300m ² 이하까지 할 수 있다.
3. 상급상황실 보고화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?			
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	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	③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	④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
4. 소방대는 어떠한 자로 구성된 조직체인가?			
①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	② 소방공무원, 방화관리자, 관계인	③ 소방공무원, 의용소방대원, 방화관리자	④ 소방공무원, 민방위대원, 자체소방대원
5.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			
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	② 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	③ 시 ·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	④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6.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?			
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.	②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.	③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.	④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웃하는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.
7.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과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?			
① 대통령령	② 행정안전부령	③ 시 · 도의 조례	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8.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누가 설치·유지 관리하여야 하는가?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소방청장 | ② 시·도지사 |
|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| ④ 소방본부장·소방서장 |

9.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수도법」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④ 급수탑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고,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.5미터 이상 1.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0.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?

-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.
-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일로 한다.
-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